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255
-----------	------

2020년 2월 26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4일, 김기덕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년 2월 26일 상정, 수정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255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sup>1)</sup> 따르면 중복장애<sup>2)</sup>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

1) 보도자료: 인권위, 13일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국가인권위원회, 2018.11.12.)

- 대상: 특수학교 교사 282명, 학교 관리자 87명, 학부모 369명 등 총 738명

2)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장애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경우임. 중도·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중도의 정신지체를 나타내며, 운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시각 및 청각의 손상, 간질 발작과 같은 중복장애를 수반하고, 특별하게 고안된 교육적, 사회적, 심리학적, 의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부모의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sup>3)</sup>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국회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할 바 있습니다.<sup>4)</sup>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 2020.2.13.).

3) 언어폭력(놀림, 비하, 욕설) : 교사 10.6%, 학교관리자 13.6%, 학부모 27.2%  
괴롭힘(과도한 장난, 따돌림) : 교사 10.1%, 학교관리자 13.9%, 학부모 21.0%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46호, 2019. 12. 10, 일부개정]

그러나 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중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1일부터이며 동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sup>5)</sup>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이 2020년 12월 11일”이라는 이유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할 것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 12. 11.]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12. 11.] 제13조의2

-1817, 2020.2.1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부칙 중 시행일을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55
----------	------------

제안연월일 : 2020년 2월 26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부칙 중 시행일을 상위법의 시행일과 맞추기 위해 수정함.

## 2. 주요내용

- 부칙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안 부칙).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부 칙 이 조례는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u>2020년 12월 11일</u> 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실태조사 등)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u> 날부터 시행한다.</p>	<p>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u></p> <p><u>제6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p> <p><u>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2020년 12월 11일</u>부터 시행한다.</p>